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56

발의연월일: 2022. 2. 4.

발 의 자 : 임이자 · 권명호 · 김석기

김선교 · 김승수 · 박대수

서병수 · 엄태영 · 하영제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환경교육의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법률이 2022년 1월 6일부터시행되었음.

법률 개정 논의 당시에 어린이집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도 학교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실제로 법률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그런데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지식과 가치관 등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린이집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이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대상기관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

는 데 필요한 교재의 개발·보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법률 제 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학교·법인"을 "보육시설·학교·법인"으로, "학생"을 "어린이·학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4조제2항 중 "제2조제2호나목"을 "제2조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를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보육시설·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을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2호나목"을 "제2조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를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보육시설·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을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2조제2호나목"을 "제2조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보육시설·학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학교"를 "보육시설·학교"로 한다.

제28조 중 "학교"를 "보육시설·학교"로 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학교"를 "보육시설·학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2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학교·법인</u> 에서 <u>학생</u> 을 대상	보육시설・학교・법인어린
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	<u>이ㆍ학생</u>
한다.	
<u> <신 설></u>	<u>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u>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u>가.</u> ~ <u>라.</u> (생 략)	<u>나.</u> ~ <u>마.</u> (현행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책무 등) ① (생 략)	제4조(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	② 제2조제2호다목
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	
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제10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	
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
목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	목까지의 보육시설·학교

- 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
 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2. <u>제2조제2호나목</u>에 따른 학교 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 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 5. (생략)
- ② 환경부장관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의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 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 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 고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④ (생 략)

1.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u>따른 어린이집·유치원</u>		
2. 제2조제2호다목		
3. ~ 5.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2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보육시		
설 • 학교		
<u>E 1144</u>		
③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		
<u>.</u>		
·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世(也%年 包百)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 정) ① 환경부장관은 정규 교 정) ① -----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 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제2조제2 -----제2조제2 호나목에 따른 학교를 위원회 호<u>다목</u>-----의 심의를 거쳐 환경교육 우수 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국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 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 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른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 보육시설·학교-----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종사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제18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 · 법인, 제15조제1항에 따 보육시설·학교-----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 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 아야 한다.

② (생 략)

-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기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u>학교</u>·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① 7 (생 략)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2조제 2호 각 목에 따른 <u>학교</u>·법인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u>보육시설·학교</u>
제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보육시설ㆍ</u>
학교
③ (현행과 같음)